

반지하 가구 지원을 위해 국토부-서울시 손 맞잡아

- 국토부 무이자 대출 5천만원과 서울시 반지하 바우처 20만원 함께 수혜 가능
- 반지하 공공매입 활성화를 위해 다세대주택 세대별 매입 추진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와 서울시(시장 오세훈)는 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이주지원과 반지하 공공매입 활성화를 위해 이주지원 혜택 확대, 세대별 공공매입 허용 등 제도개선하였다고 밝혔다.
- 먼저, 양 기관은 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이주 지원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 무이자 보증금 대출(최대 5천만원)과 서울시 반지하 특정 바우처 월세 20만원에 대해 중복 지급이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하였다.
 - ‘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’은 재해우려 지하층이나 쪽방, 고시원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가 지상층 주택으로 이주 시 최대 5천만원까지 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출하는 상품이다.
 - 서울시 ‘반지하 특정 바우처’(20만원)는 반지하 거주자가 지상층으로 이사하는 경우 최대 2년간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급하는 제도이다.
 - 중복 수혜가 가능함에 따라 각 사업의 요건을 만족하는 대상자는 전·월세 전환율 약 4.5%(서울 연립·다세대 기준)를 가정 시 전세 1억원 수준으로 지원 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.
- 아울러, 국토교통부는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의 공공매입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논의를 통해 다세대·연립주택의 경우 반지하 세대별 매입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* 하였다.
 - * (개선 전) 다세대·연립 등 전체세대 가운데 반지하세대 포함 50%이상 동의한 경우 매입 → (개선 후) 반지하 세대별 매입
 - 매입한 반지하 세대는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국민 대상 단기 임시거처로 사용하거나, 공동창고·공용회의실 등 인근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.
- 국토교통부 이상주 주거복지정책관은 “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침으로써, 반지하 가구 지원과 재해취약주택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” 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 (이주지원)	주거복지정책관 주거복지정책과	책임자	과 장	이익진 (044-201-4504)
		담당자	사무관	남공부 (044-201-4740)
(공공매입)	주거복지정책관 주거복지지원과	책임자	과 장	이중기 (044-201-4530)
		담당자	사무관	김부병 (044-201-4533)
공동 배포 (반지하 바우처) (공공매입)	서울시 주택정책과	책임자	반 장	이민경 (02-2133-9573)
		담당자	사무관	우성탁 (02-2133-9580)
		담당자	사무관	홍성수 (02-2133-7012)





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대출



· 민간임대주택 이주비 대출 ·



신청기간

◆ '23년 4월10일부터 ~ 기금 소진 시 까지(지하층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)

대출대상자

- ◆ 비정상거처에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자
[「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」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]
- ◆ 지하층, 쪽방, 고시원, 여인숙, 비닐하우스, 노숙인시설, 컨테이너, 움막, PC방 등
- ◆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

대상요건

소득기준	자산기준	소득기준	대출금리 및 대출한도	대출기간
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	부부합산 순자산 가액 3.61억원 이하	전용면적 85㎡ 이하,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	무이자, 보증금 5천만원 • 주택도시보증공사 (임차 보증금의 100% 이내) • 한국주택금융공사 (임차 보증금의 80% 이내)	2년 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 이용 가능

※ 대출 대상주택 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제1항의 주택은 「공공임대 이주자 대출」, 이용으로 신청

신청대상

◆ 비정상거처에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주로 민간임대주택에 이주하려는 자

신청절차



※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보증포털 [고객서비스] - [자산심사 및 금리안내] - [자산심사 안내]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유의사항

- ◆ 대면 접수만 가능
 - 우리은행, 국민은행, 농협, 신한은행 지점 (4월 10일부터 접수 가능)
 - 하나은행 지점 (5월 1일부터 접수 가능)
- ◆ 상기 신청기간은 기금 소진에 따라 조기마감 될 수 있음
- ◆ 「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」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서 제출
- ◆ 사전자산심사 결과 적격 시 대출이 실행되며, 사후 자산심사결과 부적격으로 확정되면 가산금리(0.1%p or 2.0%p) 부과와 대출 기간연장 등 불가
- ◆ 기금 중복대출 불가
- ◆ 그 외는 기금 버팀목 전세대출과 동일하게 적용
 - 주택도시보증포털 : <http://nhuf.molit.go.kr>
 - 기금e든든 : <http://enhuf.molit.go.kr>
- ※ 「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」는 소재지 주민센터 문의

전화문의

- 우리은행 1599-0800
- KB 국민은행 1599-1771
- 하나은행 1588-1111
- NH농협은행 1588-2100
- 신한은행 1599-8000



서울시 반지하에 거주 중인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 시 주거비를 한시적으로 지원

지원 금액 1가구 당 월 20만원 지원 (최대 2년간)

서울주거포털에서 신청대상확인 후 지원바람

지원 대상 1.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 중 침수 우려가구* 및 중증장애인** 거주 가구 우선 지원.

(단, '22. 8. 9. 당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며 '22. 8. 10. 이후 지상층 이주 가구 대상)

* '10년 이후 침수 피해 발생 반지하 주택과 그 주변 지역에 소재한 반지하 주택 거주 가구

**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의미

2.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% 이하

• 1인가구 : 335만원 • 2인가구 : 500만원 • 3인가구 : 671만원 • 4인가구 : 762만원



제외대상

공공임대주택 입주자, 주거급여 수급자, 청년월세 지원대상자, 자가소유자, 고시원·쪽방·옥탑방·근린생활시설로서의 이주자 등으로 사업목적달성에 적합하지 않는 자

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현장 접수하며 구비서류는

서울주거포털  에 안내

신청 기간 2022년 11월 28일(월)부터 신청 상시접수

문의처 다산콜센터  02-120

상세내용
보러가기



자세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(housing.seoul.go.kr) → 주거정책 → 주거복지사업 → 서울형 주택바우처 페이지를 확인하세요.